

수 정 안

의안 번호	2631
----------	------

2015. 11. 27.
복지건설위원회

1. 수정이유

분뇨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 감면 대상을 생계·의료급여
수급자로 한정하지 않도록 인용 조항을 변경함.

2. 주요내용

- 제9조제1호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
의료급여 수급자”를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”로
변경한다.

3. 참고사항

수정안 대비표 : 따로붙임

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수 정 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수정안은 다음과 같다.

제9조제1호 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
급여 수급자”를 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” 로 변경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9조(수수료의 감면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「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</u>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<u>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</u>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</p>	<p>제9조(수수료의 감면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「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</u>」 제7조제1항에 따른 <u>수급자가</u>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</p>